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7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8월 1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세영그린테크솔루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30번길 28	
	대표자	김미숙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을 통한 안전성 및 성능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P216, FP217] ② 액화수소충전소 주요설비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3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KGS AC213]	
	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오남동 부지(오남동 산 25-2, 3-25)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충전소 1개소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9월 7일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허용

○ (현행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소 등 실증을 위해 구축되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 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기후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 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안전위원회	기후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 포함 ('사업자 실증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사업자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비 배치, 가스설비 재료 사용, 안전장치 설치 등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 -253℃ 극초저온 가스 저장·취급에 따른 ① 단열성능 유지, ② 적합한 재료 사용, ③ 신축흡수조치, ④ 보일오프(boil-off) 가스 처리 등에 유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충전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①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②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저장탱크, 기화기,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수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7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6년 8월 1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2-82-06034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동삼동)		
	대표자 양원창		
확인내용	명칭 선박 및 육상 액화수소 기자재 성능평가 시설 구축		
	주요내용 액화수소 선박·육상용에 적용되는 핵심 기자재의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수소 저장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별표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KGS FU111]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른 [KGS FU211]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47(가스연료종합시험설비)		
	기간 2년		
	규모 액화수소 저장·공급·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시험 설비 1식		
	조건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선박 및 육상 액화수소 기자재 성능평가 시설 구축 및 기자재 성능평가 시험 실증 허용*

* 성능평가 시험을 위한 핵심 기자재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액화수소를 통한 성능평가 가능

○ (현행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제조소 등 실증을 위해 구축되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시설 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	검증(검토)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사업자	안전위원회 가스안전공사	기후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제품 분야 절차	절차	실증안전기준	→		검증 (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관리계획)	허가·검사
	주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위원회	기후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 포함 ('사업자 실증안전기준' 추가 가능)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①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②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제품검사 대상 : ❶액화수소 제조시설 내 특정설비 및 ❷액화수소 선박·육상용
성능평가 시험대상 기자재 중 특정설비 해당 품목

-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 준수

* 수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